

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(대안)에 대한 수정안

발의연월일 : 2026. 1. 29.

발 의 자 : 천준호 의원

찬 성 자 : 30인

수정이유 및 수정주요내용

- 가. 무제한토론 사회자의 범위를 ‘의장이 지정하는 의원’에서 ‘의장이 지정하는 부의장 및 상임위원장’으로 수정하고, 무제한토론 중 의사정족수 미충족 시 교섭단체 대표의원이 요청하면 의장이 정회하도록 하는 내용을 삭제하려는 것임(안 제106조의2제1항 후단 및 같은 조 제4항 단서).
- 나. 본회의에서 실시하는 무기명투표를 원칙적으로 전자투표로 실시하도록 하는 내용을 삭제함(안 제112조제9항 및 제112조의2).

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(대안)에 대한 수정안

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(대안)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.

안 제106조의2제1항 후단 중 “의장이 지정하는 의원이 무제한토론을 진행할 수 있다”를 “제12조에도 불구하고 의장이 지정하는 다음 각 호의 의원이 무제한토론을 진행할 수 있다”로 하고,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, 같은 조 제4항을 현행대로 하기 위하여 단서를 삭제한다.

1. 부의장
2. 상임위원장

안 제112조제9항을 현행대로 하기 위하여 같은 조에 제9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⑨ 의장이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합의를 하는 경우에는 제2항, 제4항부터 제7항까지에 따른 기명투표 또는 무기명투표를 전자장치를 이용하여 실시할 수 있다.

안 제112조의2를 삭제한다.

수정안조문대비표

[illegible]

		<u>1. 부의장</u>
		<u>2. 상임위원장</u>
②・③ (생략)	②・③ (현행과 같음)	②・③ (개정안과 같음)
④ 무제한토론을 실시하는 본회의는 제7항에 따른 무제한토론 종결 선포 전까지 산회하지 아니하고 회의를 계속한다. 이 경우 제73조제3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회의 중 재적의원 5분의 1 이상이 출석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도 회의를 계속한다. <단서 신설>	④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<u>다만, 교섭단체 대표의원의 의사정족수의 충족을 요청하는 경우 의장은 회의의 중지를 선포한다.</u>	④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<u><단서 삭제></u>
⑤ ~ ⑩ (생략)	⑤ ~ ⑩ (현행과 같음)	⑤ ~ ⑩ (개정안과 같음)
제112조(표결방법) ①	제112조(표결방법) ①	제112조(표결방법) ①

~ ⑧ (생략) ⑨ 의장이 각 교섭 단체 대표의원과 합의를 하는 경우 에는 제2항, 제4항 부터 제7항까지에 따른 기명투표 또는 무기명투표를 전자장치를 이용하여 실시할 수 있다. <신설>	~ ⑧ (현행과 같음) <삭제> 제112조의2(무기명 투표의 전자장치 이용) ① 다음 각 호의 무기명투표 는 전자장치를 이 용하여 실시한다. 1. 제85조의2제1항 에 따른 무기명 투표(위원회에서 실시하는 무기명 투표는 제외한다) 2. 제86조제4항에 따른 무기명투표 3. 제106조의2제6	~ ⑧ (개정안과 같음) ⑨ 의장이 각 교섭 단체 대표의원과 합의를 하는 경우 에는 제2항, 제4항 부터 제7항까지에 따른 기명투표 또는 무기명투표를 전자장치를 이용하여 실시할 수 있다. <삭제>
---	--	--

항에 따른 무기
명투표

4. 제112조제2항
및 같은 조 제5
항부터 제7항까
지에 따른 무기
명투표

5. 제130조제2항에
따른 무기명투표

② 제1항에도 불
구하고 다음 각
호의 어느 하나에
해당하는 경우에
는 전자장치를 이
용하지 아니할 수
있다.

1. 의장이 각 교섭
단체의 대표의원
과 합의하는 경
우

2. 전자장치의 고
장 등 특별한 사
정이 있는 경우

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

국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06조의2제1항 후단 중 “한다”를 “하며, 제12조에도 불구하고 의장이 지정하는 다음 각 호의 의원이 무제한토론을 진행할 수 있다”로 하고,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1. 부의장
2. 상임위원장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무제한토론의 실시에 관한 적용례) 제106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무제한토론의 요구서가 제출된 경우부터 적용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행	개정안
제106조의2(무제한토론의 실시 등) ① 의원이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에 대하여 이 법의 다른 규정에도 불구하고 시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토론(이하 이 조에서 “무제한토론”이라 한다)을 하려는 경우에는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이 서명한 요구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 이 경우 의장은 해당 안건에 대하여 무제한토론을 실시하여야 한다.	제106조의2(무제한토론의 실시 등) ①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하며, 제12조에도 불구하고 의장이 지정하는 다음 각 호의 의원이 무제한토론을 진행할 수 있다. <u>1. 부의장</u> <u>2. 상임위원장</u> ② ~ ⑩ (현행과 같음)
<신설> ② ~ ⑩ (생략)	